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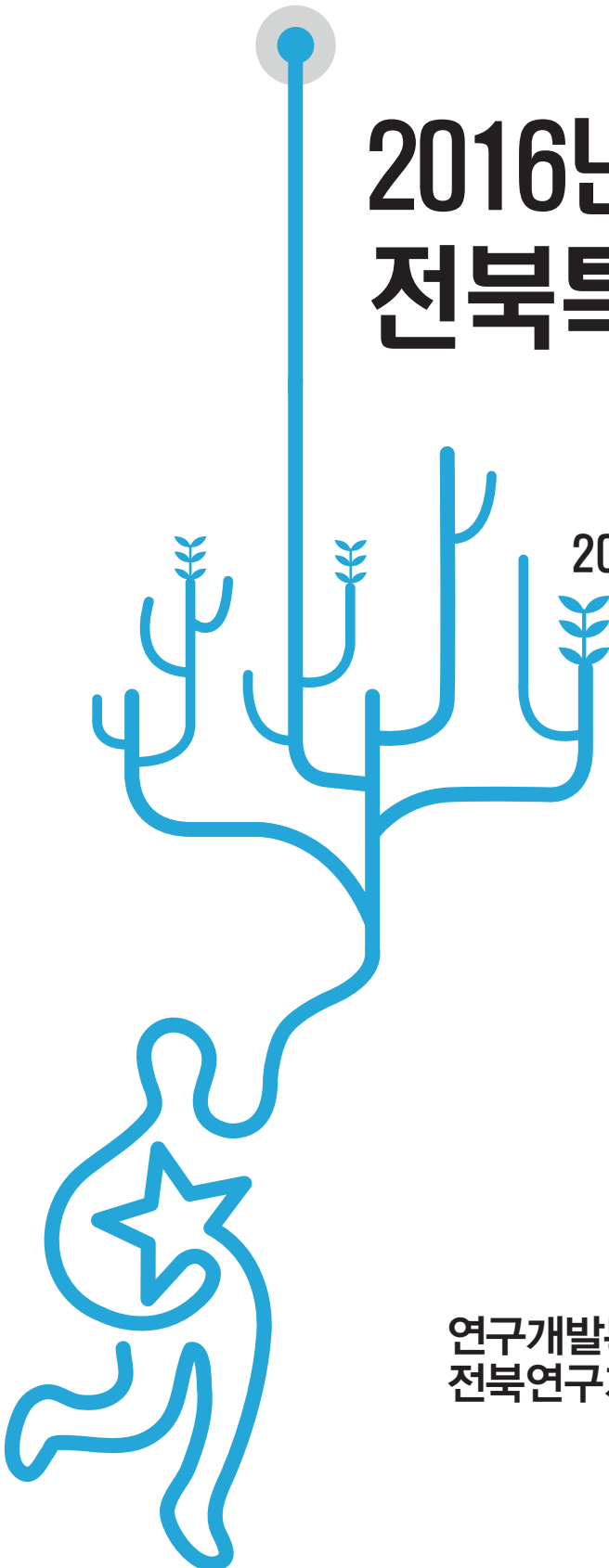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NNOPOLIS Foundation 

2016년도 전북특구 육성사업

2016. 2. 1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2016

전북특구 육성사업

목 차

I. 2016년도 전북연구개발특구 사업설명회 개요	1
II. 2016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안내	3
III. 첨단기술기업 제도 안내	19
IV. 2016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 공고	29
V. 2016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전북) 세부 시행계획	39



2016년도 전북연구개발특구 사업설명회 개요

1. 개 요

- (목 적) '15. 8월 道단위로는 최초로 지정된 전북연구개발특구(전국 5번째)의 '16년도 육성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 (일 시) 2016. 2. 17.(수) 14:00 ~ 16:00
- (장 소)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2층)
*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팔복동 2가 818)
- (주최/주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 (대 상) 산·학·연·관 관계자, 연구소기업 등 설립 희망 기업 및 기술창업 예정자 등
- (주요내용)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소개
 - 2016년도 전북특구 육성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등

2. 시간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13:00~14:00	60'	등록 및 행사안내	
14:00~14:10	10'	연구개발특구 소개(동영상 상영)	육성사업팀장
14:10~14:15	5'	인사말씀	전북특구본부장
14:15~14:20	5'	축 사	전북道 정무부지사
14:20~14:40	20'	사례 발표 : (주)매크로그래프 *명량, 스타쉽트루퍼스 등 글로벌 영화 CG 개발 전문기업	이인호대표 (제5호 연구소기업)
14:40~15:10	30'	전북특구육성사업 소개	육성사업팀장
15:10~15:20	10'	첨단기술기업 제도 설명	기획관리팀장
15:20~16:00	40'	질의응답	온라인접수 방법 등

* 세부 시간계획은 변경 가능



2016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안내



2016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안내

2016.02.17(수), 14:00





미래창조과학부

INNOPOLIS
Jeonbuk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2016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안내

Contents

- I 연구개발특구란?
- II 전북연구개발특구
- III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개요
- IV '16년도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세부내용





1-1

연구개발특구란?_창조경제 전진기지 연구개발특구



창조경제의 핵심에는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창조경제로의 여정에 대한민국 과학기술 1번지 대덕특구가 핵심적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 정부도 대덕특구를 **창조경제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 대덕특구 40주년 기념식(2013. 11월)

[

연구개발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로의 기능과 역할 강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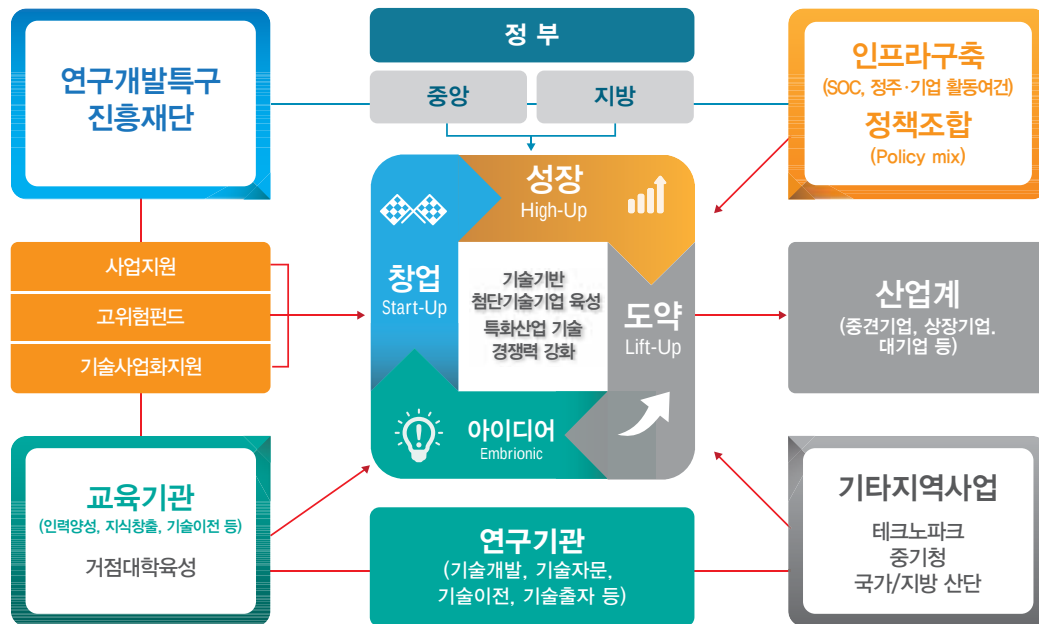
2016 전북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안내

04



1-2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특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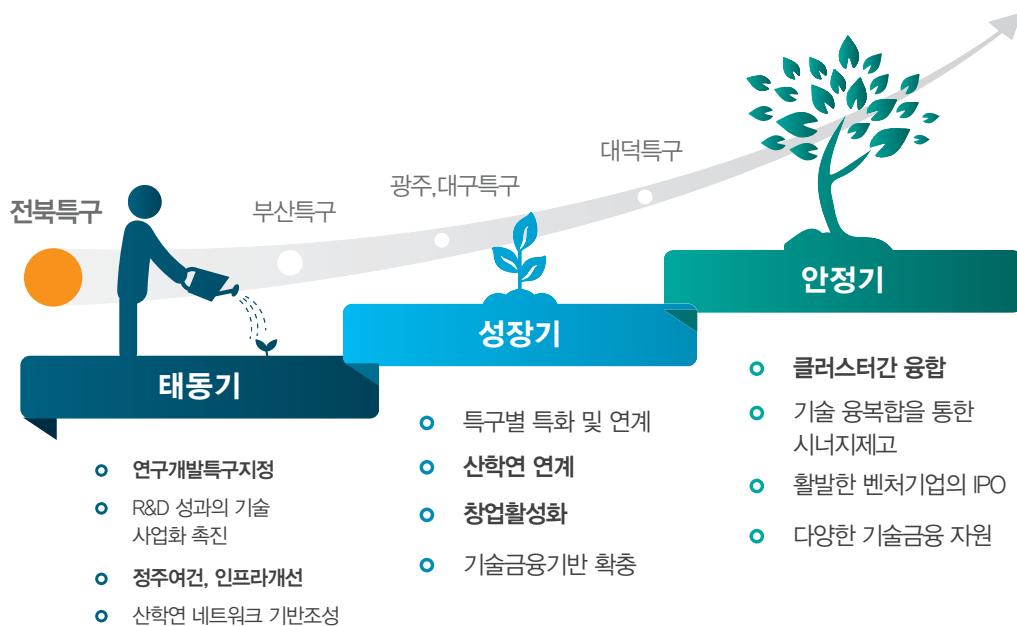
2016 전북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안내

05



1-3

연구개발특구란? 혁신클러스터 관점에서의 연구개발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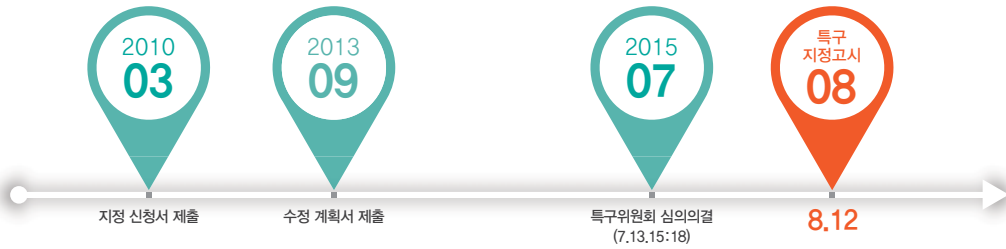
2016 전북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안내

06





2-2 전북연구개발특구_추진경과 및 지정요건



지정요건

정량적 요건



정성적 요건

- 특구인근 대량 산업단지 입지 (Large industrial complex located near the special zone)
- 연구개발 투자 및 특허등록 비중이 높을 것 등 (High ratio of R&D investment and patent registration, etc.)

전북특구여건

정량적 요건

-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 121개
 - 국립 및 정부 출연연구소 10개, 기타 111개
- 이공계대학: 3개
 -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정성적 요건

- 31개 항목 미래부 TFT검토결과 적정 (31 items, Future Planning Ministry TFT review results are appropriate)



2-3 전북연구개발특구_지역적 범위



사업화 촉진지구 전주·혁신도시



융복합 소재·부품 거점지구 완주



농생명융합 거점지구 정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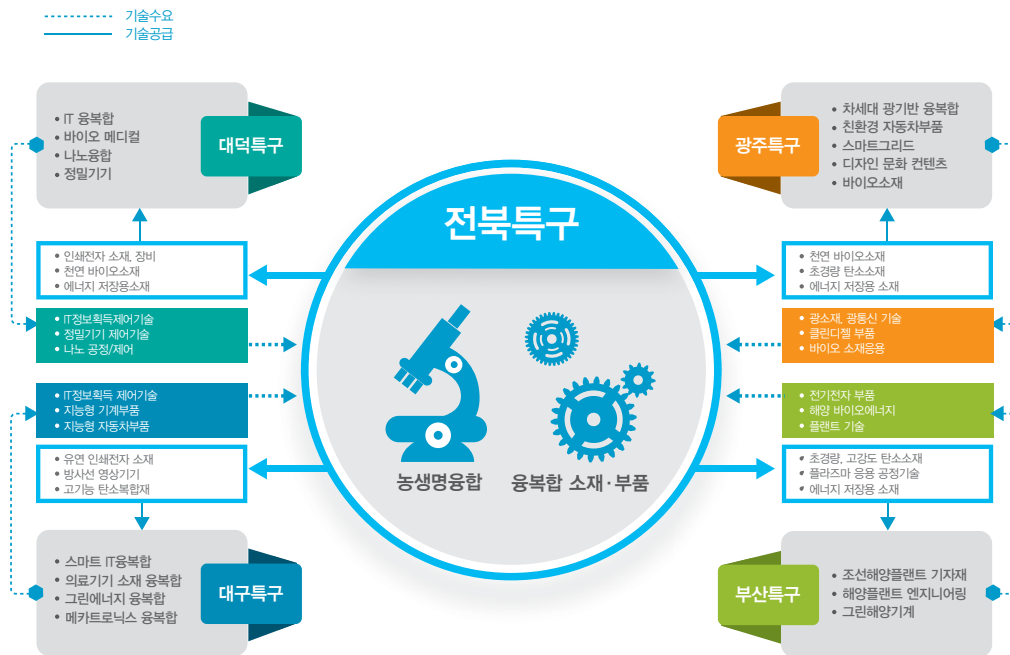


- 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일원의 3개 지구 (Location: 3 zones in Jeonju City, Jeongeup City, and Wanju-gun, Jeollabuk-do)
- 면적: 16.3 km² (Area: 16.3 km²)



2-4

전북연구개발특구_특화분야 육성과 특구간 연계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개요



3-1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개요

사업목적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 기업에게 이전 또는 출자(연구소기업)될 수 있도록 하고, 창업과 기술사업화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실현

* 공공기술 발굴 및 이전(출자연계) ▶ 사업화(제품화 및 기업창업) ▶ 해외진출지원으로 막힘없는 기술사업화 선순환 구축 및 일자리 창출로 창조경제 구현

〈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공동 프로세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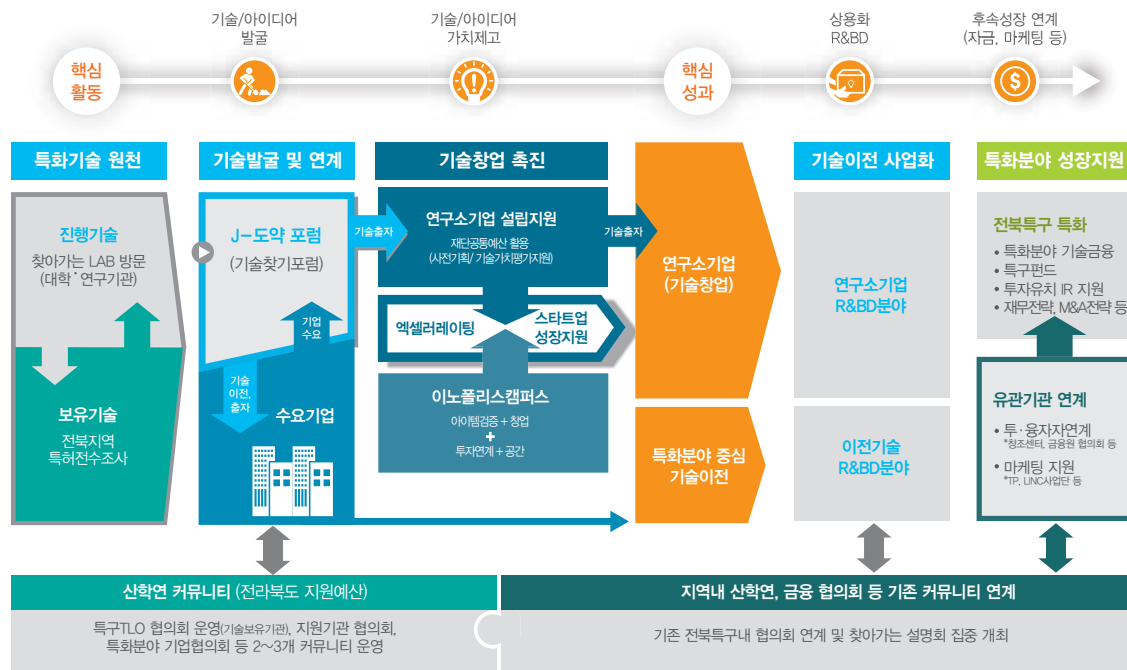
2016 전북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안내

13



3-2

'16년도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추진 프로세스



2016 전북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안내

14

IV

‘16년도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세부내용**

4-1 기술발굴 및 연계지원사업

사업목적 _

사업화유망 공공기술 및 연구소기업 출자 가능기술을 수요기업에 적기에 공급, 공공기술 사업화촉진

사업내용 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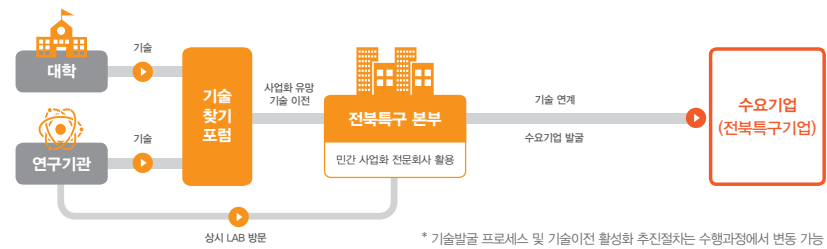
전북특구본부와의 협업을 통한 특화분야별 유망기술 발굴 및 연구소기업 출자가능기술에 대한 분석, 출자 희망 기업과의 연계활동

지원내용 _

지원규모	지원범위
총 사업비 1,200백만원 이내 4개 내외 수행기관 선정 * 기관당 최대 300백만원 내외 (정부출연금 기준)	기술수요 발굴조사, 기술DB구축, 기술마케 팅활동, 연구소기업 수요발굴, 기술출자 및 이전 연계 재반비용 지원 기술찾기포럼을 통해 발굴된 기술연계 확산을 위해 특구내외 기업수요발굴 후 기술이전 재반비용 지원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자격 : 사업화전문법인 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원절차 _



* 기술발굴 프로세스 및 기술이전 활성화 추진절차는 수행과정에서 변동 가능

2016 전북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안내

16



4-2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사업목적 _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의 조기 사업화 촉진

사업내용 _ ① (기술 이전 R&BD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 과제 지원
② (연구소기업 R&BD분야)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의 수요를 발굴하여 사업화 전주기 지원

지원내용 _ 총 예산 4,050백만원

	기술이전 R&BD분야	연구소기업 R&BD 분야
지원규모	제품 혁신형 연간 200백만원 이내/ 최대1년 시장 창출형 연간 400백만원 이내/ 최대2년	과제당 연간 300백만원 내외 /1년 또는 2년
지원대상	주관기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기업 참여기관 기업, 대학 출연연, 전문연 등 연구기관 및 컨설팅기업, 디자인전문기업 등과 컨소시엄 구성가능	특구법 제9조 5제 2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 연구소기업 단독, 공공연구기관 컨설팅 전문기업 등 컨소시엄형태 참여가능
지원내용	기술적 타당성 검증 및 상용화 기술개발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 지원규모는 정부출연금 기준이며 각 수행기관별 지원규모는 평가를 통해 결정, 컨소시엄 구성 가능

2016 전북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안내

17



4-3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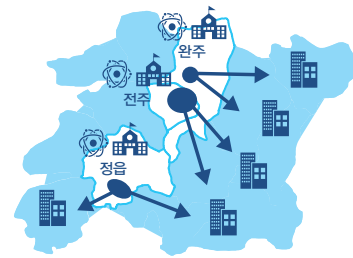
대상유형 _ 기술이전 R&BD 분야 유형별 지원대상

지정요건	① 전북특구 내부의 공공연구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또는 전북특구 외부의 공공연구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② 주관기관이 소재한 특구지역에 신청을 원칙으로 함
------	--

A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북특구 입주기업에서 사업화

B 특구 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북특구 입주기업에서 사업화

C 전북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북특구가 아닌 전라북도 내 기업에서 사업화



△전라북도내

2016 전북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안내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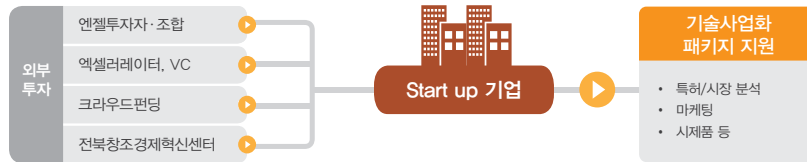


4-4 스타트업 성장지원사업

사업목적

연구소기업 등 기술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안정적 시장 진출기반 마련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대상
기업당 70백만원 이내 8개 내외 기업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특구 창업프로그램 등을 통해 창업하여 외부투자를 받은 초기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창업3년 이내

지원자격

- 사업화 **시장진입/마케팅 전략, 투자유치 등**, 기술 **IP전략, 기술개발 전략 등** 등 분야의 컨설팅
-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Biz 포트폴리오 수립 및 Biz 모델링 수립
- 공공연구성과의 실증화, 상용화를 위한 구조설계, 시작금형제작, 조립장비 등 시제품제작, Mock-Up 제작, 시장진입에 소요되는 비용 등 지원



4-5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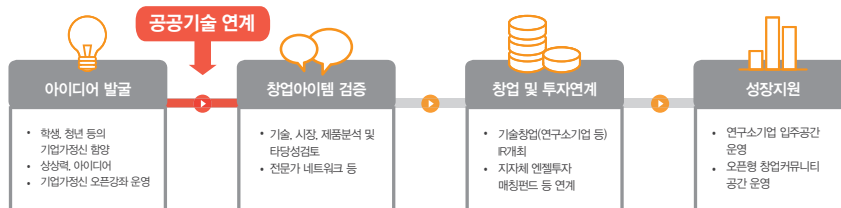
사업목적

특구 거점대학의 기술창업 역량 배양과 연구소기업 등 특구 내 신규창업을 촉진

사업내용

특구 내 거점대학을 이노폴리스캠퍼스로 지정하고 **창업활동**을 지원

사업과정



지원대상

전북특구 내 소재대학 중 이공계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보육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구성하는 사업 또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이 구성하는 컨소시움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범위
년 400백만원 이내 12개 사업단 지원	사업단 운영비를 포함하여, 창업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 지원 • 주관기관의 민간부담금 비율은 정부지원금의 25% 이상 • 간접비 비율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한함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



4-6 엑셀러레이팅지원사업

사업목적

전북특구 내 창업 기업의 투자연계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 성장 도모

사업내용

- ① 민간 엑셀러레이터를 선정하여 (예비)창업자에 대해 아이템 검증하고 보육(멘토링) 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
- ② 엑셀러레이팅 기법, 시장진출 전략, 성공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성과 확산

지원대상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기능을 갖춘 전문법인 (컨소시움 구성가능)

* 후보대상 : 기존 엑셀러레이터, 엔젤 투자조합, 클럽 등

지원대상

최대 **300백만원** 이내 / **1개** 엑셀러레이터 지원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세부 사업기간은 수행기관 및 특구재단 간 별도의 협약기간에 따름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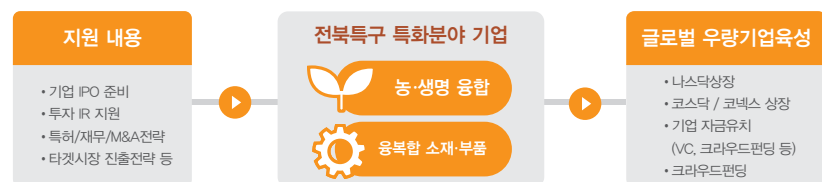
4-7 특화분야 기술금융 등 성장지원사업

사업목적

전북특구 기업의 기술금융 활용 촉진 및 성장지원

사업내용

전북특구 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IR 지원, 법률자문, 재무분석 및 타겟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등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10개내외 기업 지원	전북특구 내 기업 및 연구소기업	기술금융을 활용한 투자유치, 상장 준비 (코스닥, 코넥스) 타겟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 투자 IR (VC, 크라우드 펀딩 등), 상장IR, 법률자문, 재무전략 수립, 타겟 시장 조사, 특허전략 수립, M&A전략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4-8 연구소기업 지원사업

사전기획 지원

사업내용

연구소기업 설립 전 발굴된
출자기술 및 수요 발굴



출자기술-기업매칭 및 연구소기업 설립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기획 지원

사업예산

총 1,500백만원 (5개 특구 공통 활용 예산)

사업기간

'16년 2월~12월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내용
건당 최대 1,500백만원 이내	연구소기업 설립주체 등 *연구소기업 설립희망 기업 등 **특구법 제 9조의 3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	수요기업 · 기술 발굴 및 매칭, 비즈니스모델 수립, 연구소기업 설립 시 법률, 회계, 투자유치 등 연구소기업 설립 전반에 대한 기획

기술가치평가 지원

사업내용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가치 및 사업타당성 평가를 직접지원
*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이 직접 기술가치 평가 실시

지원범위	지원대상
기술가치평가 (사업타당성평가) 보고서 제공	특구법 제2조제5호 및 제9조의3제1항 각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를 하고자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 중인 *기관 등 * 설립주체 :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2016 전북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안내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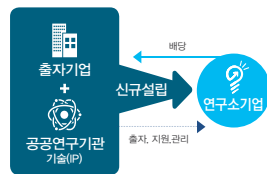
연구소기업 지원제도 [참고]

연구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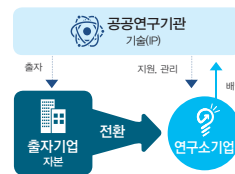
법률이 정하는 설립 주체가 공공연구기관 (대학, 출연(연), 전문(연) 등)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20% 이상을 출자해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특구법 제 9조의 3제 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 (특구법 제2조 제6항)

01 설립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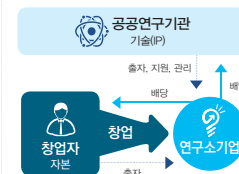
• 합작투자형



• 기존기업 기술출자형



• 신규창업형



02 운영현황

- '06년부터 '16년 2월 현재 총 175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였으며 160개사가 운영중
(지역별 설립 현황: 대덕 93개 / 광주 23개 / 대구 40개 / 부산 16개 / 전북 3개)
- 연구소기업의 총 매출액 및 고용은 '14년 기준 2,365억원 및 850명으로 집계

03 지정혜택

- (국 세)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감면
(지방세) 조례 개정하여 '16년중반영 예정
- 연구소기업 사업화자금 지원 (특구기술사업화)
 - 기술검증 및 상용화를 위한 자금지원
('16년 연간 최대 200백만원 이내, 최대 2년간 지원)
* 대덕특구 기준 : 연구소기업 83개사 중 64개사(77%) R&BD지원
- 기술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및 기술금융 연계형 기업성장 지원

연구소기업제도



2016 전북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안내

24



4-9 지원대상별 참여가능 사업 요약(전라북도 기업/기관 중심)

기술발굴과 이전기술사업화 연계



연구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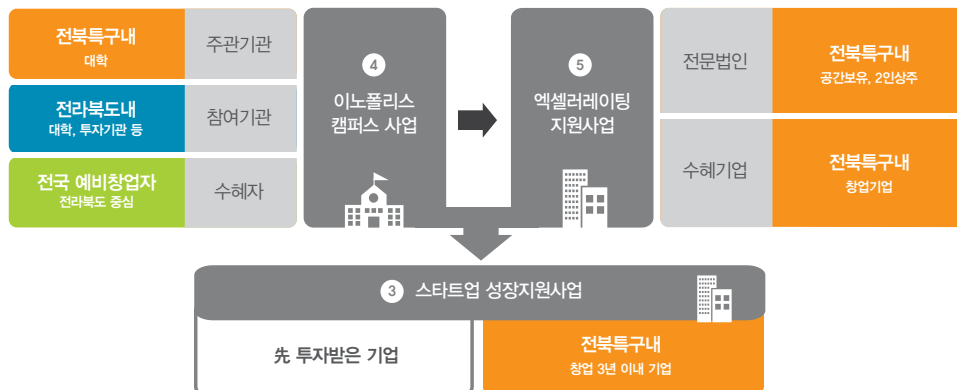
2016 전북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안내

25



4-10 지원대상별 참여가능 사업 요약(전라북도 기업/기관 중심)

기술창업



특화분야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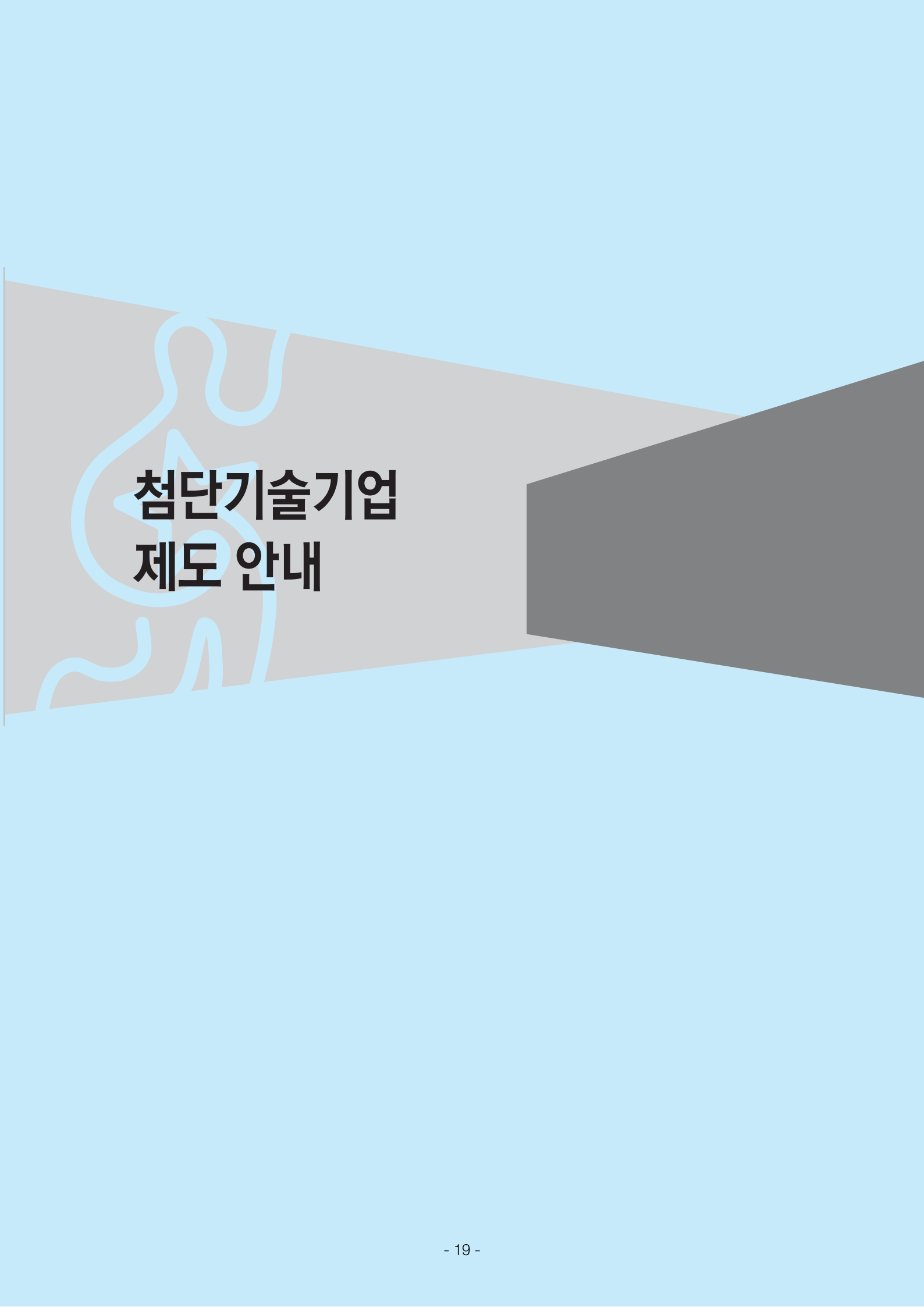
2016 전북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안내

26



전북의 새로운 100년
농생명과 첨단소재 기반의 세계일류 R&D허브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제도 안내





5-1 첨단기술기업 제도 안내

첨단기술기업 개요

목적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특구법에 따라 지정 받은 첨단기술기업

특징

첨단기술(산업)의 핵심은 기술의 혁신성에 있으므로 첨단 기술산업은 높은 연구개발투자로 필요로 하는 기업

▶첨단기술산업과 관련된 제품은 그 수명주기가 매우 짧으나 기술 집약도가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

법적근거

특구법 제2조(정의) 제3호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 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특구법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것
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4.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생산·판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 첨단기술기업 제도 안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지정요건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 기업

특구내 입주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구 입주절차가 완료된 기업

첨단기술기업 생산 및 판매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을 보유, 생산한 기업*

*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충족

연구개발비 및 첨단제품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30% 이상이며, 연구개발비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5-3 첨단기술기업 제도 안내

첨단기술기업 지정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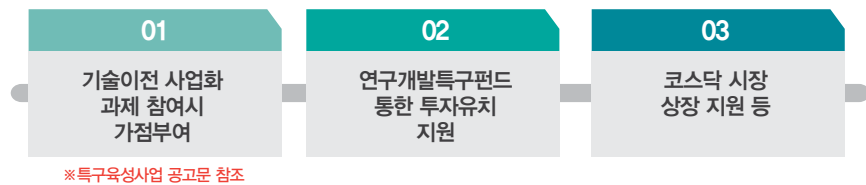
세제혜택

구분		혜택 내용
국세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소득세	
지방세	취득세	전북도,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조례 개정 * '16년 상반기 추진예정
	재산세	

01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0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지역별 시세감면조례, '15년 8월 지정된 전북특구는 현재 조례반영 진행중에 있음

특구육성사업 연계 지원



5-4 첨단기술기업 제도 안내

첨단기술기업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전,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후 첨단기술기업 지정 신청
-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받은 날로부터 2년이며, 만료 후 재지정 신청을 해야함



※첨단기술기업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신청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관리 시스템 (<http://miwon.inopolis.or.kr>)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새로운 100년
농생명과 첨단소재 기반의 세계일류 R&D허브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 절차 및 혜택

첨단기술기업 지정 절차 및 혜택

① 첨단기술기업 정의 및 특징

- (정 의)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특구법에 따라 지정 받은 첨단기술기업
- (특 징) 첨단기술(산업)의 핵심은 기술의 혁신성에 있으므로 첨단 기술산업은 높은 연구개발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
- 첨단기술산업과 관련된 제품은 그 수명주기가 매우 짧으나 기술 집약도가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

② 법적근거

- (법적근거) 특구법 제2조(정의) 및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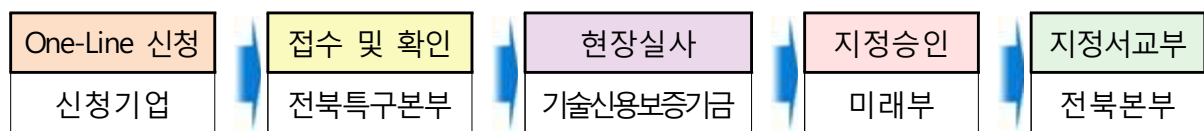
- ◆ 특구법 제2조(정의) 제3호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 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 ◆ 특구법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 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것
 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4.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및 절차

- (지정요건)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 기업

- 연구개발비 및 첨단제품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30%이상이며, 연구개발비 비율이 5%이상인 기업
-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을 보유·생산한 기업*
 - *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 (지정절차) 신청전,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후 첨단기술기업 지정 신청
 -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받은 날로부터 2년이며, 만료 후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

[첨단기술기업 지정 프로세스]



④ 첨단기술기업 지정혜택

- (국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최초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세제혜택)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세제혜택

구분		혜택 내용
국세*	법인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소득세	
지방세**	취득세	· 전북도,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조례 개정 ('16년 상반기 추진예정)
	재산세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지역별 시세감면조례, '15년 8월 지정된 전북특구는 현재 조례반영 진행중에 있음

- (특구육성사업 연계 지원) 기술이전 사업화 과제 참여시 가점부여, 연구개발특구펀드 통한 투자유치 우대 및 코스닥 시장 상장 지원 등



2016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 공고

2016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 공고

공공연구기관(출연(연), 대학, 전문(연) 등)의 연구성과인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또는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2016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김차동

1. 사업목적

■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 기업에게 이전 또는 출자(연구소기업)될 수 있도록 하고, 창업과 기술사업화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실현

- '공공기술 발굴·이전(출자) 연계 → 사업화(제품화 및 기업창업) → 해외진출지원'으로 막힘없는 기술사업화 선순환 구축 및 일자리 창출로 창조경제 구현

2.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16년도 추진방향

■ 사업화에 유망한 기술을 찾아서 필요한 기업에게 연계하여 드립니다.

- (기술발굴·연계) 5개의 연구개발특구(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가 고유의 기술발굴체계*를 확립하여 기업의 필요 목적별(이전·출자·창업)로 기술 발굴 및 활용 지원

* 기술발굴체계 : 기술찾기포럼(대덕), G-Tech포럼(광주), 기술사업화Seed포럼(대구), M&S Tech포럼(부산), J-도약포럼(전북)

- 특구내 공공연구기관(출연(연), 전문(연), 대학 등)과 협력하여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검증하는 활동을 각 특구본부에서 직접 수행
- 특구기술정보포털(<http://www.dit.or.kr>)에 발굴 기술을 상시 공개하고, 하반기중 연구개발특구 '창조특허기술박람회'를 개최하여 기술전시와 함께 이전상담회 등 개최

■ 역동적인 혁신경제의 상징 ‘연구소기업’의 적극적 설립을 도와드리고,
이미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튼튼한 성장을 밀착 지원합니다.

○ 연구소기업은 ?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

* 전국의 출연(연), 대학 등의 공공기술

- (사전기획 지원)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희망하는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기술지주회사 등 설립주체가 설립전에 필요로 하는 사전기획을 지원
- (출자기술 가치평가) 연구소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지주회사 등 설립주체를 대상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대상기술에 대한 가치평가(사업타당성)를 지원
- (밀착형 성장지원) 대덕, 광주, 대구 및 부산, 전북특구본부가 특구별로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제공

■ 기업이 이전(출자)받은 기술의 R&BD 등 사업화 쏠과정을 지원합니다.

- (기술이전사업화사업)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및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 연구성과를 활용한 제품개발, 양산준비 등의 기술사업화(R&BD) 과제 지원
 -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기술사업화(R&BD)과제 선정·지원
 - 기업 성장단계 및 기업 준비정도에 따라 기술사업화(R&BD)과제 지원을 세분화하고, 연구소기업 집중 육성

■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연구개발특구에서 창업이 되고 초기에 성장하는데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 (특구 기술창업 지원) 특구별 거점대학 및 엑셀러레이터의 혁신자원을 활용해,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굴·검증 및 멘토링은 물론, 필요기술을 찾아주어 안정적 창업 지원
 - 이노폴리스캠퍼스* 및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기술창업·사업화 연계 강화

* “이노폴리스캠퍼스”란 새로운 기술중심 패러다임의 기업환경 조성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지정하고 지원하는 특구형 산학협력 캠퍼스

■ 연구개발특구만의 산업·기업 특성을 반영한 특구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특구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 (특구별 특성화) 공공기술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특구 특성화 분야* 기업 지원

* (대덕)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연계사업화/ (광주) 부품·소재 분야 특화기업 성장촉진 지원/ (대구) 스마트 지식서비스, 의료 분야 아이디어-공공기술업그레이드/ (부산)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시물레이션 및 시험인증 지원// (전북) 농생명융합, 융복합소재·부품 기업 기술 금융 지원

■ 연구개발특구의 해외투자유치 등 글로벌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 해외 엑셀러레이터 등 글로벌 자금시장과 네트워크 확보로 특구기업의 투자유치 및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3.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규모, 접수방법

※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 세부사항이 각 특구별·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아래 요약정보를 참고하여 자세한 지원신청은 각 특구별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별첨파일 1~5)를 확인하고 공고에 맞게 신청 바랍니다.

■ 사업화 유망기술의 발굴과 필요기업에게 이전지원

○ 각 특구별 기술발굴 및 연계 담당

구분	지원대상	총예산 (백만원)	건당지원규모 / 지원기간	접수방법	접수기간 (년,월,일)	문의
전북	민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그룹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	1,200	300백만원내 외 / 1년 이내	온라인 접수 *세부내용 참조	'16.2.15~2.26	063-905-9753

■ 연구소기업 설립지원

○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기획

구분	지원대상	총예산 (백만원)	건당지원규모 / 지원기간	접수방법	접수기간	문의
전북	특구법 제2조 및 제9조 의3에 따른 공공연구기 관 등으로서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 중인 출연 (연)·대학 등 공공연구 기관/ 연구소기업 설립 희망기업 등	250 내 외	15백만원이내 / 대상별 차등 *세부내용 참조	현장접수 *세부내용 참조	수시	063-905-9752

○ 연구소기업 출자기술 가치평가

구분	지원대상	지원방식	지원내용	접수방법	접수기간	문의
전북	특구법 제2조 및 제9조 의3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등으로서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 중인 기관	특구 재단이 직접 수행	가치평가 보고서제공	현장접수 *세부내용참조	수시	042-865-8931* *아래 내용참조

* 기술평가 실행전담은 기술평가팀이며, 전북특구는 전북본부 육성사업팀(063-905-9753)에게 설립관련 문의 및 가치평가 요청 접수 바랍니다.

■ 공공기술을 이전(출자, 연구소기업) 받은 기업의 사업화(R&BD) 과제지원

○ 기술이전사업화(R&BD과제)

- 제품혁신형 : 단기과제로 1년 과제 추진 후 바로 시장진입이 가능한 사업화 과제
- 시장창출형 : 중기과제로 2년 이내 기간 과제 추진으로 신시장 진출 및 시장 확대 등 부가가치가 큰 사업화 과제

구분	지원대상	총예산 (백만원)	건당지원규모 / 지원기간	접수 방법	접수 기간	문의
전북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4,050	(제품혁신형) *연200백만원 이내/ 최대 1년 이내 (시장창출형) *연400백만원 이내/ 최대 2년 이내 (연구소기업) *연 300백만원 / 1~2년 이내	온라인 등록 *온라인 접수 (*16.2.18~3.4)	상반기 접수 (*16.2.2~3.4)	063-905-9753

* 공공기술 이전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를 해당특구본부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한 예비 연구소기업을 포함하며, 과제선정 후 협약전까지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제출하여야함

** 상반기 접수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연구소기업의 추가설립 소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내에서 하반기중에 추가공고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규모는 특구별 세부사업계획을 참조

■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술이 더해지는 창업과 엑셀러레이팅, 기술연계, 산업체질 개선 등 특구별로 특화된 성장지원 사업

○ 이노폴리스캠퍼스(특구창업 지원)

구분	지원대상	총예산 (백만원)	건당지원규모 / 지원기간	접수 방법	접수 기간	문의
전북	전북특구 소재 대학	400	연400백만원이내/ 2년이내	온라인 접수 *세부내용 참조	'16. 3.10~3.24	063-905-9753

○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특구창업 지원)

구분	지원대상	총예산 (백만원)	건당지원규모 / 지원기간	접수 방법	접수 기간	문의
전북	엑셀러레이팅 운영이 가능한 민간법인 (컨소시엄 가능)	300	300백만원이내 / 1년이내	온라인 접수 *세부내용 참조	'16.3.7~ 3.18	063-905-9753

○ 스타트업 성장지원 사업(창업투자유치 기업 후속성장지원)

구분	지원대상	총예산 (백만원)	건당지원규모 / 지원기간	접수 방법	접수 기간	문의
전북	외부 투자를 받은 초기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창업 3년 이내)	600	70백만원이내 / 1년이내	현장접수 *세부내용참조	수시	063-905-9753

■ 연구개발특구만의 산업·기업 특성을 반영한 특구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구별 특성화 사업

○ 특화분야 기술금융 등 성장지원(전북특구 특화: 농생명융합, 융복합소재·부품)

구분	지원대상	총예산 (백만원)	건당지원규모 / 지원기간	접수 방법	접수 기간	문의
전북	전북특구 내 특화분야 기업 및 연구소기업 등	200	20백만원이내 / 6개월이내	현장접수 *세부내용참조	수시	063-905-9753

■ 특구기업 및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특구내 네트워크 지원

○ 해외진출 지원사업(Global A.I.M 프로그램)

구분	지원대상	총예산 (백만원)	건당지원규모 / 지원기간	접수 방법	접수 기간	문의
全 특구	(수행기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및 동일 기능 수행 법인	750	美: 450백만원/ 1년 이내 中: 300백만원/ 1년 이내	현장접수 *세부내용참조	'16.2.2 ~3.4	042-865-8903
	(지원기업) 특구내 연구 소기업, 스타트업 등		美: 10개사 내외 中: 10개사 내외	우편 또는 현장접수 *세부내용참조	'16.2.2 ~3.11	

■ 2016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및 첨부자료 안내

- 각 특구별(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pms.innopolis.or.kr>)

4. 신청자격, 신청방법, 선정절차 및 일정, 지원 제외대상 등 : “별첨 1” 참조

- “별첨1~6” 각 특구별(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세부사업 시행계획(안) 참조

5. 관련 법령 및 규정, 보안등급 분류

■ 관련 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보안등급 분류 : R&BD과제(기술이전사업화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0조에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 구분 기준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6. 접수방법 및 문의처

■ 기술이전사업화사업(연구소기업사업화 포함)

○ (접수방법) 온라인으로 전산접수

-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16.02.18(목) ~ 03.04(금) 15:00)까지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 시스템(<http://pms.innopolis.or.kr>)으로 온라인 접수

* 과제에의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사업관련 문의는 신청하고자하는 해당특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기타 전산등록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의는 사업관리시스템에 문의

○ (공고기간) '16. 2. 2(화) ~ 3. 4(금) 15:00까지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접속폭주로 인해 원활한 접수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 기술이전사업화사업 이외의 사업

- ▶ 각 특구별 세부사업 시행계획(별첨파일 1~5)에서 정하는 접수방법 및 기간에 따름

7. 사업설명회

구 분	일 시	장 소
전북연구개발특구	'16.2.17(수), 14:00	전북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 (전북 전주시 덕진동 반룡로 110-5) *문의 : 063-905-9752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시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에 공지 예정

※ 설명회 이후에도, 특구내 산학연 구성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므로 각 특구별 문의처에 사업설명에 대한 추가 문의 가능

8. 기타사항

-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예산은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신규 사업규정 제·개정될 경우는 사업별 적용규정이 신규 사업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로 지원사업내용은 각 특구별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별첨파일 1~5)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우선적용하며, 사업별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업 담당에게 확인 바람

**2016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전북) 세부 시행계획**

2016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전북) 세부 시행계획

I 세부사업 구성 및 사업별 담당 안내

■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세부사업 구성

① 기술발굴 및 연계 지원사업	44
② 기술이전사업화사업	49
③ 스타트업 성장지원사업	58
④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	61
⑤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66
⑥ 특화분야 기술금융 등 성장지원사업	70
⑦ 연구소기업 사전기획 지원사업	73
⑧ 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76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 공고 및 접수기간

사 업 명	전산 접수기간	서류접수 기간	담당자
기술발굴 및 연계 지원사업	2.15(월) ~ 26(금) 15:00까지	-	기공서
기술이전사업화사업	2.18(목) ~ 3.4(금) 15:00까지	-	
스타트업 성장지원사업	-	수시접수 (담당자 문의)	
이노폴리스캠퍼스지원사업	3.10(목) ~ 24(목) 15:00까지	-	
엑셀러레이팅지원사업	3.7(월) ~ 3.18(금) 15:00까지	-	
특화분야 기술금융 등 성장지원사업	-	수시접수 (담당자 문의)	김미숙
연구소기업 사전기획지원사업	-	수시접수 (담당자 문의)	
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	수시접수 (담당자 문의)	

■ 전산접수 방법

- 접수기간 : 각 사업별 접수기간 확인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http://pms.innopolis.or.kr>))
 - <http://pms.innopolis.or.kr> → 로그인 → 사업관리 → 사업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하기

신청절차	온라인 과제 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정보 직접입력	온라인 접수 등록 완료
작성 및 확인	미등록 기업 회원가입	기본사업정보, 사업비정보, 제출서류 업로드	-

※ 접수시 시스템 주의사항 :

- 권장 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 버전9 이상, 구글 크롬에서 과제신청 요청(ie8 이하에서는 호환성문제로 화면 깨짐)
- 접수 마지막날은 온라인 접수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 과제접수를 가급적 하여주시기 바람
- 입력종일 때 장기간 자리를 비울 시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임시저장 필요
- 과제 접수시 입력 문의가 많아 사전 매뉴얼(메인페이지 바로가기-> 매뉴얼다운로드)을 참조하여 입력 요청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담당자	연락처	E-mail
기공서 전임	063-905-9753	sebastian@innopolis.or.kr
김미숙 주무관	063-905-9752	ddajams@innopolis.or.kr

- 전산접수 시스템 문의

담당자	연락처	E-mail
권장원 고은선	042-865-8815 042-865-8812 042-865-8894	pms@innopolis.or.kr

■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세부사업 설명회 개최

일 시	장 소	연락처	E-mail
'16. 2. 17(수) 14:00	전북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	063-905-9752	ddajams@innopolis.or.kr

- * 전북테크노파크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동 반룡로 110-5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특구진흥재단홈페이지(www.innopolis.or.kr)에 공지 예정

■ 기타사항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화 유망기술 및 연구소기업 출자 가능기술을 수요기업에 적기에 공급하고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

□ 사업내용

- 전북특구본부와의 협업을 통한 특화분야 별 유망기술 발굴 및 연구소기업 출자 가능 기술에 대한 분석, 출자 희망 기업과의 연계 활동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사업비 1,200백만원 이내

- 4개 내외 수행기관 선정, 기관당 최대 300백만원 내외 지원(정부출연금 기준)

* 각 수행기관별 지원규모는 평가를 통해 결정하며,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신청자격 : 사업화전문법인(컨소시엄 구성 가능)

-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18조에 의한 연구개발 서비스업
-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법인
- ③ 특허법인 또는 기술이전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법인(기술거래기관 이외의 민간법인은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3건 이상 보유)
- ④ 산업자원통상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 * 사업수행 인력규모는 최소 3명 이상(단순 사무직원 제외)으로 구성
 - ** 주관기관 사업책임자는 의사결정권을 갖는 임원 이상으로 최소 50% 이상 사업에 참여하며 참여율 100% 사업참여 인력이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함을 원칙

* 사업제안서는 주관기관에서 제출하고, 참여기관은 신청서식에 대표자 날인

□ 지원범위

- 특구내 공공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수요 발굴 조사, 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마케팅활동(기술이전설명회 등), 연구소 기업 수요발굴·기술출자 및 이전 연계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 기술찾기포럼을 통해 발굴된 기술 연계·확산을 위해, 특구내외 기업 수요 발굴 후 기술이전 제반 활동 지원

* 특구내 공공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수요 발굴 조사, 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마케팅활동(기술이전설명회 등), 연구소기업 수요발굴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일즈(홍보) 및 수요기업 발굴·매칭
- 사업화전문법인인 기술찾기포럼과 연동하여 기술 공급 지원, 기술홍보* 및 필요시 기술이전 설명회** 지원
 - * 타특구 연계를 위한 연구실, 기업 방문 및 시장조사, 기술이전 협상 지원 등 실시
 - ** 수행기관 선정 후 전북특구본부와 일정 협의
- 이전, 출자, 창업, 타특구 연계 등 수요기업의 필요목적별로 이전 촉진

< 기술 연계·확산 지원 프로세스(안) >

기술발굴	기술찾기포럼 발굴기술 분석	매칭기술탐색 (타특구 연계·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우수기술 탐색	수요기업 발굴 및 기초상담 수행	기업심층상담, 기술이전설명회 개최, 네트워크 지원 등	연구소기업 설립 등 수요기업의 필요목적별 이전연계
기술찾기포럼 특화분야 Lab 방문	협력 (사업화전문법인+특구본부)	협력 (사업화전문법인+특구본부)	협력 (사업화전문법인+특구본부)

※ 기술발굴 프로세스 및 기술이전 활성화 추진절차는 수행과정에서 변동 가능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 선정평가 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20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내부역량, 추진전략, 사업실적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50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정도	
	수행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 실적	
추진일정, 예산운영, 성공가능성	세부 추진일정 및 예산활용의 적정성	30
	업무분장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사업추진의 성공가능성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원칙

3. 추진절차

사업공고	'16.2.2	◦ 사업규모, 사업내용, 신청기간, 신청서식 등
↓		
신청서접수	'16.2.15~26	◦ 지원신청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		
세부사업 내용평가	'16.2월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평가 * 평가일정 변경 가능, 접수기관에게 추후 일정 통보
↓		
지원대상 선정.협약	'16.3월	◦ 우선 사업수행기관 선정 ◦ 사업수행기관 협약 체결
↓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		
종료평가	사업종료후 1개월내	◦ 사업수행결과보고서 및 사업수행내용 발표평가
↓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후 2개월내	◦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 추진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처

○ 사업공고 온라인 사이트

- 미래창조과학부(<http://www.msip.go.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pms.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포털(<http://www.innopolis.or.kr>)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온라인 접수 기간
'16. 2. 15(월) ~ 2. 26(금), 15:00까지
※ 온라인 접수 마감시한 이후에는 접수 불가함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http://pms.innopolis.or.kr>))

- <http://pms.innopolis.or.kr> → 로그인 → 사업관리 → 사업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하기

신청절차	온라인 과제 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과제 직접입력	온라인 과제 등록 완료
작성 및 확인	미등록 기업 회원가입	기본사업정보, 사업비 정보, 제출서류 업로드	-

※ 접수시 시스템 주의사항 :

권장 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 버전9 이상, 구글 크롬에서 과제신청 요청(ie8 이하에서는 호환성문제로 화면 깨짐)

접수 마지막날은 온라인 접수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 과제접수를 가급적 하여주시기 바람

입력종일 때 장기간 자리를 비울 시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임시저장 필요

과제 접수시 입력 문의가 많아 사전 매뉴얼(메인페이지 바로가기-> 매뉴얼다운로드)을 참조하여 입력 요청

□ 제출서류 목록(전자파일로 온라인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모든 기관 제출
3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최근 3개년도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5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해당 시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E메일
기공서 전임	063-905-9753	sebastian@innopolis.or.kr

5.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연구기술을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우수 공공연구성과의 시장진출 확대 도모
- 공공기술을 핵심기술로 활용하여 연구소기업이 창업에서 성장단계로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내용

-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 과제 지원
-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의 수요를 발굴하여 연구소기업의 상용화 기술 개발 및 마케팅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2. 지원내용

① 지원현황

- 예산규모(신규과제) : 총 4,050백만원
* 상기 정부예산은 주관 부처의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분야 : 기술이전사업화 부문, 연구소기업R&BD 부문

구 분		제품혁신형	시장창출형
이전기술R&BD 분야	지원규모/ 기간	2억원 이내/ 최대 1년	4억원 이내/ 최대 2년
연구소기업R&BD 분야	지원규모/ 기간	3억원 이내 / 1년 또는 최대 2년	

- 제품혁신형 : 단기과제로 1년 과제 추진 후 바로 시장진입이 가능한 사업화 과제
- 시장창출형 : 중기과제로 2년 이내 기간 과제 추진으로 신시장 진출 및 시장 확대 등 부가가치가 큰 사업화 과제

※ 위 분야 중 선택하여 사업에 신청해야 하며, 중복신청 불가

※ 지원규모, 지원기간 및 지원과제의 수는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위원회를 통해 결정

② 세부 지원분야

《 기술이전R&BD 분야 》

□ 지원규모(정부출연금 기준) 및 기간

- 제품혁신형 : 연간 200백만원 이내 / 최대 1년
- 시장창출형 : 연간 400백만원 이내 / 최대 2년

- ① 일반 과제와 대형과제는 중복 지원 불가하며, 대형과제는 특구,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 등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의미가 있는 과제로서, 제안된 과제 중 적합한 과제가 없는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② 지원기간,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수는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공공연구기관 :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5항에 따르며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③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 및 산학협력단 등도 포함

** 특구재단에서 발굴한 추천기술은 “별첨5-2-2”를 참조하고, 그 외에도 상기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가능

※ 단, 특구이외 지역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전북특구 내 기업으로만 제한함(주관기관 기준이며, 참여기관은 지역제한 없음)

- 참여기관 : 기업, 대학·출연(연)·전문(연) 등 연구기관, 컨설팅기업, 디자인 전문기업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업화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체결 또는 기술보유기관의 기술이전 추진에 대한 확약사항 증빙이 가능해야 함

* 최종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기술적 타당성 검증, 상용화기술개발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 시험·분석·평가, 보완 기술 확보, 기술패키징, 시작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디자인 목업 제작, 마케팅 기획 등

□ 과제유형

- 전북특구 내부의 공공연구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또는 전북특구 외부의 공공연구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 주관기관이 소재한 특구지역에 신청을 원칙으로 함

<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지원유형 >



* 'C'형의 주관기관 소재지는 전북 지역으로 제한

《 연구소기업R&BD 분야 》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300백만원 내외(1년 또는 2년, 정부출연금 기준)

* 지원기간,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수는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

□ 지원대상

- 연구소기업 단독 또는 공공연구기관, 컨설팅 전문기업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능
 - * 과제 접수 마감일까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에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서 제출 기업도 접수 가능
- 특구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서 제출기업으로 등록신청서 제출기업은 과제 선정 후 협약 체결 전까지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지원내용

○ 기술적 타당성 검증 및 상용화 기술개발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 시험·분석·평가, 보완 기술 확보, 기술패키징,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목업 제작, 마케팅 기획 등

③ 민간부담금 비율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사업참여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정부출연금 출연기준	참여기업현금 부담 기준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마. 그 밖의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 기업의 범위) 제1호에 따른 기업
-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신청 예시 >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현 물	현 금	
금 액	200백만원	약 59백만원	약 7백만원	약 266백만원
비 율	75%	22.5%	2.5%	100%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연차평가에서 조기완료(“혁신성과”, “보통”), 최종 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

* 세부 징수 기준 및 방법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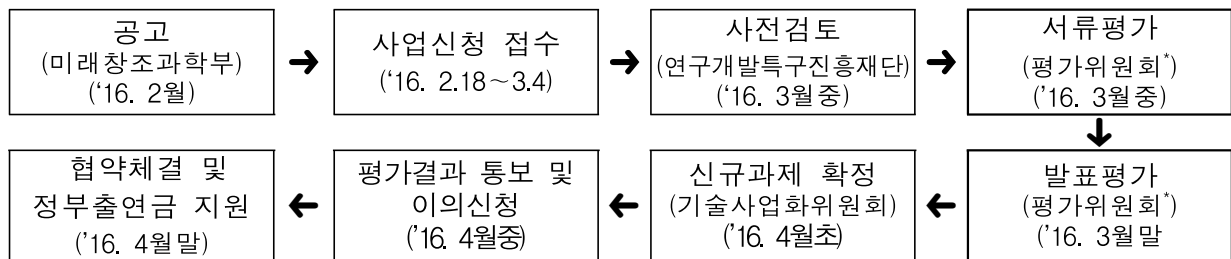
- 기술료 징수 대상 확정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래의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를 따름

3.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일정(공통사항)



* 각 특구별로 접수한 과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통합평가 실시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평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기술성	• 이전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40
	• 이전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30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사업화 역량	• 주관기관(참여인력)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30
	• 주관기관의 이전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세부지원 분야 : 기술이전사업화 해당) : 총 5점 한도

- 신청일 현재, 법인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1점)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90점 이상)”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녹색인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3점)
- ‘15년, ‘16년 특구추천기술 (3점) - 추천기술 리스트
- 대덕특구의 기술을 이전받은 전북특구 내 기업이 대덕특구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전북특구 내 기업이 전북특구 지역 내 기술을 이전받아 신청하는 경우(2점)
- 타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특구)의 기술을 이전받은 전북특구 기업이 전북특구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 예규 제8호)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유의사항

구분	세 부 내 용
공통 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에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 등을 통해 일부과제는 중단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는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술이전 사업화	○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한 과제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과제로 확정된 경우, 협약체결 시까지 사업화대상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함 ○ 기술이전 확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으로 제공하는 “기술이전의향서”를 사용하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등)의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함
연구소기업 R&BD	○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 제출기업으로 등록신청서 제출기업은 과제 선정 후 협약 체결 전까지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4.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처

- 사업공고 온라인 사이트
 - 미래창조과학부(<http://www.msip.go.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pms.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포털(<http://www.innopolis.or.kr>)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온라인 접수 기간	
'16. 2. 18(목) ~ '16. 3. 4(금), 15:00까지	
※ 온라인 접수 마감시한 이후에는 접수 불가함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http://pms.innopolis.or.kr>))
- <http://pms.innopolis.or.kr> → 로그인 → 사업관리 → 사업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하기

신청 절차	온라인 과제 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수행 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과제 직접입력	온라인 과제 등록 완료
작성 및 확인	미등록 기업 회원가입	기본사업정보, 사업비 정보, 제출서류 업로드	-

※ 접수시 시스템 주의사항 :

권장 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 버전9 이상, 구글 크롬에서 과제신청 요청(ie8 이하에서는 호환성문제로 화면 깨짐)
 접수 마지막날은 온라인 접수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 과제접수를 가급적 하여주시기 바람
 입력중일 때 장기간 자리를 비울 시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임시저장 필요
 과제 접수시 입력 문의가 많아 사전 매뉴얼(메인페이지 바로가기-> 매뉴얼다운로드)을 참조하여 입력 요청

□ 제출서류(온라인 등록 서류) 목록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전자파일(PDF)	서식 1호	
2	사업자등록증	전자파일(PDF)	-	모든 기관 제출
3	수행기관 의무이행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전자파일(PDF)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전자파일(PDF)	서식 3호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전자파일(PDF)	서식 4호	
6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전자파일(PDF)	서식 5호	
7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전자파일(PDF)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전자파일(PDF)	-	최근 3개년도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전자파일(PDF)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0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전자파일(PDF)	-	주관/참여기업 규모별 확인서 발급 * 공고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11	연구소기업 등록증(등록신청서***)	전자파일(PDF)	-	연구소기업 등록예정인 경우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 제출

* '15년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미확정 시 가결산 결과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재무자료
확정에 따라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 시 협약의 해약 가능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 제출기업은 과제 선정 후 협약 체결 전까지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5.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 사업담당자 연락처

구 분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기술이전사업화사업	기공서	063-905-9753	sebastian@innopolis.or.kr

※ 별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발굴 추천기술 리스트 및 설명자료 참조
("별첨 5-2-2" '추천기술' 폴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연구소기업 등 기술창업 초기 투자를 촉진하고 안정적 시장진출 촉진

☐ 사업내용

- 스타트업이 필요한 특허/시장분석, 마케팅, 시제품 등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으로 초기 안정·성장 도모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기업 당 70백만원 이내 / 8개 내외 기업지원

* 先투자(정부출연금의 20% 이상) 받은 스타트업 법인에게 출연금 지원

**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 아이템, 투자기관의 투자 및 지원계획 따라 차등 지원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 지원대상

-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특구 창업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창업하여 외부 투자**를 받은 초기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창업 3년 이내)

* 이노폴리스캠퍼스, 엑셀러레이팅 사업 등

** 엔젤투자자 또는 엔젤조합, VC, 엑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등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세부 지원내용

- 스타트업이 필요한 특허/시장분석, 마케팅, 시제품 등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으로 초기 안정·성장 도모
 - 사업화(시장진입/마케팅 전략, 투자유치 등), 기술(IP전략, 기술개발 전략 등) 등 분야의 컨설팅
 -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Biz 포트폴리오 수립 및 Biz 모델링 수립
 - 공공연구성과의 실증화·상용화를 위한 구조설계, 시작금형제작, 조립 장비 등 시제품제작, Mock-Up 제작, 시장진입에 소요되는 비용 등 지원

□ 선정평가 항목

구분	세부평가 항목	비중
사업 목적과 부합성	· 사업수행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20
	· 조직구성 및 관리 능력	10
	· 재무계획의 구체성	20
지원의 효과성	· 지원의 필요성 및 적절성	2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20
	·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1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하며, 선정된 엑셀러레이터와 평가기준, 절차를 조율하여 대상 스타트업을 선정, 지원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및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pms.innopolis.or.kr>)
- 접수방법 : 인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팔복동 2가 818)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 접수기간 : 수시접수(신청전 담당자 문의)

□ 제출자료

- 공문 1부 (총괄책임자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등 기재)
- 사업신청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번호	제출서류	제출사항	비 고
1	사업신청 공문	원본 1부	문서파일 별도제출
2	사업(신청.계획)서	원본 1부, 사본 9부	문서파일 별도제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주관기관
4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원본 1부	주관기관
5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원본 1부, 사본 1부	주관기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원본 1부	주관기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컨소시엄으로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관련서류 제출

4. 유의사항

☐ 참여제한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참조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E메일
기공서 전임	063-905-9753	sebastian@innopolis.or.kr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특구 거점대학의 기술창업 역량 배양과 연구소기업 등 특구 내 창업 촉진

□ 사업내용

- 특구 내 거점대학을 이노폴리스캠퍼스로 선정하여 지정하고 창업활동* 지원

* **창업활동** : 사업화 유망 아이디어 발굴/공공기술과 연계 → 발굴 아이템의 검증 (기술성, 시장성 등) → 연구소기업 설립 등 창업 및 투자자 연계 → 창업 및 기업활동 공간 제공 등 기업 성장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年 400백만원 이내 / 최대 2년 / 1개 사업단 지원

□ 지원범위 : 사업단 운영비를 포함하여, 창업프로그램 운영 위한 제반 비용 지원

- 주관기관의 민간부담금(현물) 비율은 정부지원금의 25% 이상

- 간접비 비율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한함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 지원대상(주관기관 자격)

- 주관기관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전북특구 소재 대학 중 신청일 현재 이공계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 보육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구성하는 사업단

* (주관기관 신청요건)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명시된 각 호의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② 고등교육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교, ③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 보육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 본 사업 창업기업 및 전북특구 연구소기업 등을 위한 전용 입주공간을 확보하고 제안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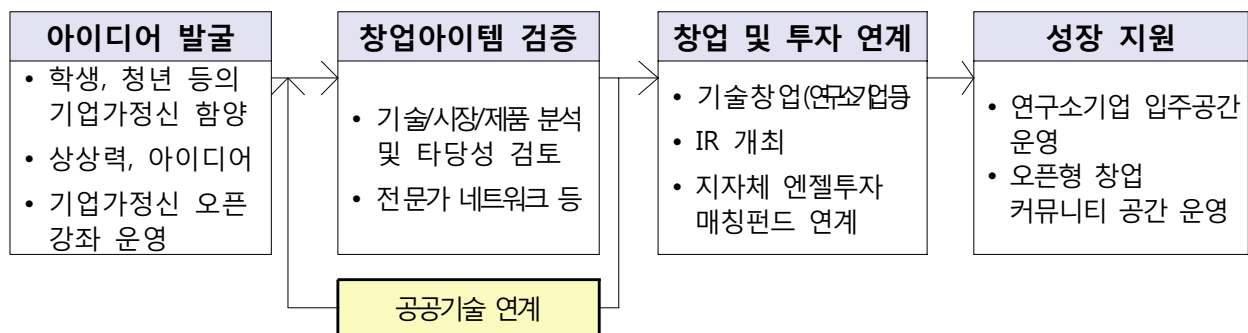
- 참여기관은 타 대학, 출연(연), 민간법인 등 사업목적에 필요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주관기관은 사업단장, 관련 학부(학과) 소속 참여교수진, 행정인력 등으로 이뤄진 별도의 사업단 구성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

* 1차년도 사업 종료 후 연차평가 실시하고, 평가결과 불량 시 2차년도 사업 중단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 사업 프로세스(예시)



- 아이디어 발굴 : 대학생 및 일반인의 아이디어, 창조경제타운 및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아이디어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예비창업자 정기/수시 모집
- 창업아이템 검증 : 예비창업자의 모의 기술사업화 실습과 엔젤투자자 및 전·현직 대기업 임원 등을 통해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 검증 및 매칭 지원
- 공공기술 연계 : 예비창업자와 공공기술의 연계를 통해 특구내 연구소 기업 설립
- 창업 및 투자연계 : 엔젤투자설명회 등 IR 개최 및 지역 매칭 펀드를 활용하여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및 투자 연계
- 성장지원 : 연구소기업 입주공간 및 오픈형 창업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통하여 창업자에 대한 후속 성장 지원체계 마련
- 기타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 데모데이 등 협업 프로그램 포함하여 제안 가능
- 주관기관(사업단)에 맞는 상세 운영방안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안

3. 추진일정

사업공고	'16.2.2	◦ 사업규모, 사업내용, 신청기간, 신청서식 등
↓		
신청서접수	'16.3.10~24	◦ 지원신청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		
세부사업 내용 평가	'16.3월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평가
↓		
지원대상 선정.협약	'16.3월	◦ 우선 사업수행기관 선정 ◦ 사업수행기관 협약 체결
↓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		
종료평가	사업종료후 1개월내	◦ 사업수행결과보고서 및 사업수행내용 발표평가
↓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후 2개월내	◦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 추진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사업단장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종료평가 시,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기간 및 종료 후, 주관기관(사업단)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예비창업자 선정 및 지원 현황, 창업 기업 정보 등을 수시로 보고

5. 평가 항목

□ 현장 평가 기준 (10점)

구분	세부평가 항목	비중
주관기관 적합성	· 대학내 창업보육시설 운영 현황 및 적정성	10
	· 타 정부 지원사업 주관기관 자체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및 성과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발표 평가 기준 (90점)

구분	세부평가 항목	비중
주관기관 전문성	· 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목표·추진체계의 적절성	10
	· 사업단 구성 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기술창업·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체계성	· 멘토 인력의 전문성 및 규모 적절성	25
	· 창업자(연구소기업 포함) 발굴 및 선정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정책 부합성	· 연구소기업 설립 및 투자 유치 방안의 적절성	55
	· 창업자 후속지원 계획의 구체성(자체사업 타정부사업 및 투자연계 등)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6.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접수기간

온라인 접수 기간
'16. 2. 22(월) ~ 3. 2(수), 15:00까지
※ 온라인 접수 마감시한 이후에는 접수 불가함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http://pms.innopolis.or.kr>))

- <http://pms.innopolis.or.kr> → 로그인 → 사업관리 → 사업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하기

신청절차	온라인 과제 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과제 직접입력	온라인 과제 등록 완료
작성 및 확인	미등록 기관 회원가입	기본사업정보, 사업비 정보, 제출서류 업로드	-

※ 접수시 시스템 주의사항 :

권장 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 버전9 이상, 구글 크롬에서 과제신청 요청(ie8 이하에서는 호환성문제로 화면 깨짐)

접수 마지막날은 온라인 접수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 과제접수를 가급적 하여주시기 바람

입력중일 때 장기간 자리를 비울 시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임시저장 필요

과제 접수시 입력 문의가 많아 사전 매뉴얼(메인페이지 바로가기-> 매뉴얼다운로드)을 참조하여 입력 요청

□ 제출자료(전자파일로 전산에 업로드)

- 공문 1부 (총괄책임자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등 기재)
- 사업신청서 등

번호	제출서류	제출사항	비 고
1	사업신청 공문	원본 1부	전자파일 업로드
2	사업(신청.계획)서	원본 1부	전자파일 업로드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주관/참여기관 (전자파일 업로드)
4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원본 1부	주관/참여기관 (전자파일 업로드)

7.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참조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E메일
기공서 전임	063-905-9753	sebastian@innopolis.or.kr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북특구 내 창업 기업의 투자연계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 성장 도모

☐ 사업내용

- 민간 엑셀러레이터를 선정하여 (예비)창업자에 대해 아이템 검증·보완하고 보육(멘토링) 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최대 300백만원 이내 / 1개 엑셀러레이터 지원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 지원대상

-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 기능을 갖춘 전문법인 (컨소시엄 구성 가능)

* (후보대상) 기존 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조합, 클럽) 등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세부사업기간은 수행기관 및 특구재단 간 별도의 협약기간에 따름

☐ 세부 사업내용

- 엑셀러레이터가 보유한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의 발굴,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종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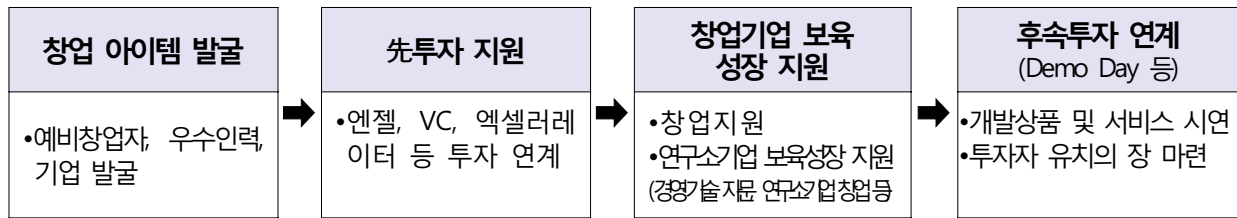
* 엑셀러레이터의 전문가 활동 및 멘토링 비용, 교육 및 연수과정 운영경비, 국내외 VC 및 엔젤투자자대상 사업계획 발표회 등 스타트업의 선발-보육-투자유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규모는 수행기관이 제안한 운영규모 및 교육기간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총 사업비 중 수행기관 현물부담 비율은 25% 이상

- 엑셀러레이팅 기법, 시장진출 전략, 성공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성과확산

<엑셀러레이터 지원 프로세스(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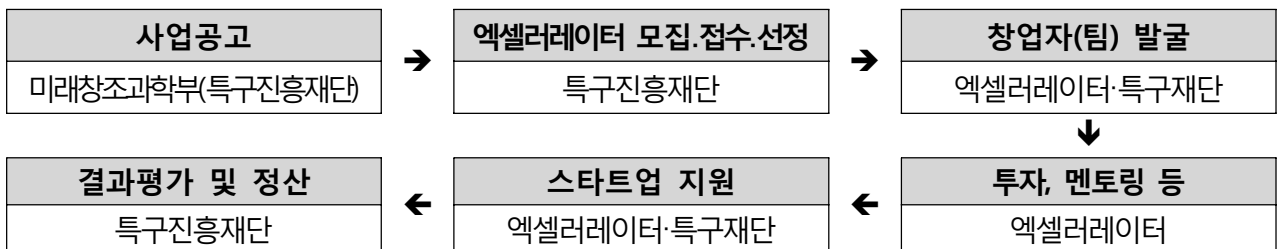
□ 엑셀러레이터 수행 조건

구분	세부 내용
구성원	·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수행하는 기업의 임원급 근무 경험 또는 벤처기업 창업 등의 경력을 보유한 자가 멘토로 참여할 것 · 전담 관리인력은 창업기업 발굴.투자.보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보유 · 엑셀러레이터는 특구 내 사무 및 전문상담 공간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2명 이상이 상주하여 스타트업 전문 상담 진행
프로그램	· 1년에 10개 이상의 예비창업자(팀)을 발굴하여 집중적 멘토링 등 프로그램 운영(창업 5건 이상) * 사업계획 발표 및 아이디어 공유 선배기업인 멘토링 등 예비창업자(팀)가 직접 참여하는 창업 준비 활동을 포함 · 엑셀러레이팅 계획에 적합한 보육공간 확보 및 연계 계획 · 멘토역할과 투자를 위한 파트너(엔젤투자자, VC 등) 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시 및 사업완료 후 프로그램 매뉴얼 제출
투자	· 창업자(팀)의 창업자금(pre-seed) 투자를 위한 적절한 펀딩 수단을 보유 · 창업자(팀)의 평균 투자규모 및 지분확보 계획을 제출 * 수행기관의 선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한해 정부출연금을 지원 예정 (정부출연금의 20%이상 투자, 정부출연금 지원한도는 각 기업당 70백만원 이내) ·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등과의 협력 등 후속투자 유치 지원계획(투자 5건 10억원 이상) · 특구육성사업을 통해 발굴된 스타트업과의 투자연계 및 창업시 연구소 기업 설립 유도 · 기업의 글로벌 진출 위해 해외 엑셀러레이터와 공동사업 발굴 및 지원 · 해외시장에 진출할 기업을 선발하여 해외제품 출시 및 투자유치 지원 · 엑셀러레이터 수행기관(엑셀러레이터) 공동 Demoday 개최(2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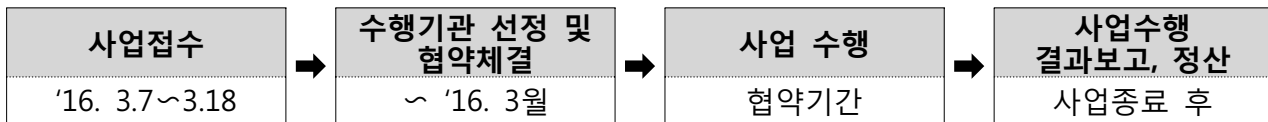
□ 추진체계

- (미래창조과학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사업 공고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등
- (평가위원회) 선정·결과평가
- (수행기관)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 추진절차



□ 평가절차 및 일정



* 평가 및 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상기일정은 신청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평가항목

구분	세부평가 항목	비중
수행기관 전문성	· 엑셀러레이팅 전문 기관으로서의 적합성	30
	· 기관의 사업추진이지 및 목표·추진체계의 적절성	
	·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체계성	· 강사, 멘토인력의 전문성 및 규모 적절성	20
	· 예비창업자(팀) 및 기업발굴 계획의 적절성	
	·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20
	· 멘토링 및 네트워킹 운영지원 방안의 적절성	
	· 창업자 운영관리 및 후속지원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스타트업 및 투자계획 적절성	· 성과창출을 위한 스타트업의 사후관리 방안의 타당성	30
	· 투자금 조성규모 및 엔젤/VC 투자기능 연계 방법의 적절성	
	· 창업팀당 투자규모 및 지분확보 계획의 적절성	
	· 특구육성사업을 통해 발굴된 스타트업과의 투자연계	
합 계		100

* 상기 평가기준은 상황 및 필요 등에 따라 공고시 변경 가능

3.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접수기간

온라인 접수 기간	
'16. 3. 7(월) ~ 3. 18(금), 15:00까지	
※ 온라인 접수 마감시한 이후에는 접수 불가함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http://pms.innopolis.or.kr>))

- <http://pms.innopolis.or.kr> → 로그인 → 사업관리 → 사업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하기

신청절차	온라인 과제 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과제 직접입력	온라인 과제 등록 완료
작성 및 확인	미등록 기업 회원가입	기본사업정보, 사업비 정보, 제출서류 업로드	-

※ 접수시 시스템 주의사항 :

권장 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 버전9 이상, 구글 크롬에서 과제신청 요청(ie8 이하에서는 호환성문제로 화면 깨짐)
 접수 마지막날은 온라인 접수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 과제접수를 가급적 하여주시기 바람
 입력종일 때 장기간 자리를 비울 시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임시저장 필요
 과제 접수시 입력 문의가 많아 사전 매뉴얼(메인페이지 바로가기-> 매뉴얼다운로드)을 참조하여 입력 요청

□ 제출자료(전자파일로 전산 업로드)

- 공문 1부 (총괄책임자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등 기재)
- 사업신청서 등

번호	제출서류	제출사항	비 고
1	사업신청 공문	원본 1부	전자파일 업로드
2	사업(신청.계획)서	원본 1부	전자파일 업로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주관/참여기관 (전자파일 업로드)
4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원본 1부	주관/참여기관 (전자파일 업로드)
5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	원본 1부	주관/참여기관 (전자파일 업로드)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원본 1부	주관/참여기관 (전자파일 업로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컨소시엄으로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관련서류 제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북특구 초기기업의 기술금융 활용 촉진 및 성장지원

☐ 사업내용

- 전북특구 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IR 지원, 법률자문, 재무분석 및 타겟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등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10개내외 기업 지원

* 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 지원대상 : 전북특구 내 기업 및 연구소기업

☐ 지원내용

- 전북특구 내 특화분야 기업 중 기술금융을 활용한 투자유치, 상장 준비(코스닥, 코넥스 등), 타겟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 투자 IR(VC, 클라우드 펀딩 등), 상장IR, 법률자문, 재무전략 수립, 타겟 시장 조사, 특허전략 수립, M&A전략 등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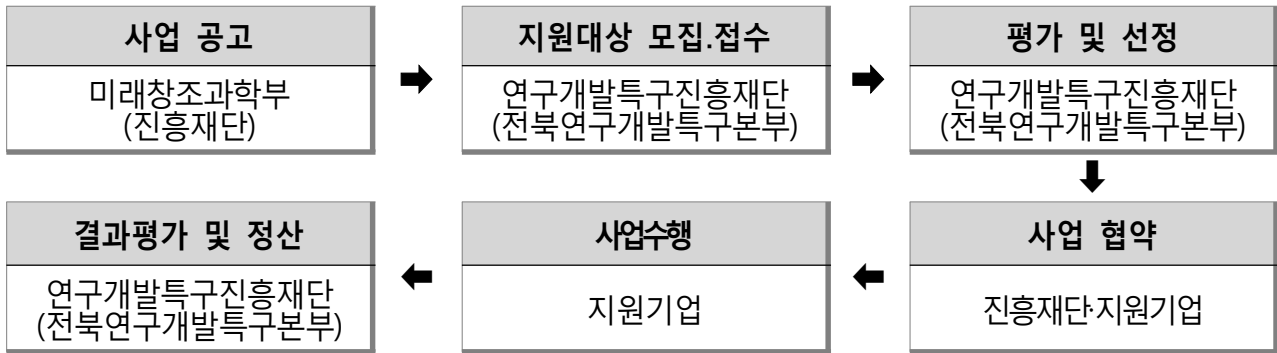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중(%)
타당성	○ 지원의 필요성	30
	○ 사업목적과 추진전략의 적정성	
	○ 사업계획, 성과목표 등 사업내용의 타당성	30
	○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효과성	○ 사업지원 후 기대효과	40
	○ 사업지원 후 활용성	
합 계		10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3.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주요일정

사업공고	'16.2.2	◦ 사업규모, 사업내용, 신청기간, 신청서식 등
↓		
신청서접수	수시접수	◦ 지원신청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		
세부사업 내용 평가	수시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평가
↓		
지원대상 선정.협약	수시	◦ 우선 사업수행기관 선정 ◦ 사업수행기관 협약 체결
↓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		
종료평가	사업종료후 1개월내	◦ 사업수행결과보고서 및 사업수행내용 발표평가
↓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후 2개월내	◦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 추진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접수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팔복동 2가 818)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 신청서 제출기간 : 수시접수

* 세부 접수방법 및 절차 등은 사업담당자 문의

☐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0부 및 전자파일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참조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E메일
기공서 전임	063-905-9753	sebastian@innopolis.or.kr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요기술·기업 발굴 및 매칭, 비즈니스 모델링, 투자연계 등 설립기획을 통하여 양질의 연구소기업 설립 유도 및 활성화

□ 사업내용

- 연구소기업 설립 전 발굴된 출자기술 및 수요발굴 → 매칭 및 연구소기업 설립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기획 지원

□ 사업예산 : 1,500백만원(각 특구별 소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용)

□ 사업기간 : '16년 2월 ~ 12월(수시접수)

* 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격월 또는 분기별로 선정평가 진행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연구소기업 설립주체*, 연구소기업 설립희망 기업 등

* 특구법 제9조의3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

□ 지원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된 타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건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수요기업·기술 발굴 및 매칭, 비즈니스모델 수립, 연구소기업 설립 시 법률, 회계, 투자유치 등 연구소기업 설립 전반에 대한 기획

3. 사업 추진절차

절차	일정	주체	주요내용
사업공고 ↓	'16.2.2	■ 미래창조과학부 (특구진흥재단)	■ 지원대상, 기간, 내용 등 공고
신청.접수 ↓	수시접수	■ 특구진흥재단 (각 특구본부)	■ 상시지원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선정평가 ↓	격월/ 분기별	■ 특구진흥재단 (각 특구본부)	■ 자격요건, 지원내용 및 금액 확정 등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협약기간	■ 연구소기업 설립주체 및 설립 희망기업 등	■ 기술발굴 및 이전 사업 연계 ■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및 연구소기업 수요 발굴, 매칭 등
결과보고 ↓	종료 후	■ 연구소기업 설립주체 및 설립 희망기업 등	■ 완료보고서 및 사업비실적보고서 제출
완료평가 ↓	-	■ 특구진흥재단 (각 특구본부)	■ 평가기준에 따라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 평가 * 필요시 서면평가 실시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실시	평가 후	■ 특구진흥재단 (각 특구본부)	■ 사업비 지급 ■ 정산기관 지정 및 정산 실시

* 추진절차 및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

□ 지원기관(설립주체 및 기업 등) 선정기준

구 분	평가항목	비중(%)
평가항목 (100%)	•사업추진전략 및 방안의 적정성	60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소기업 설립연계의 구체성 및 적정성	
	•사업추진의 성공가능성	40
	•사업결과의 기대효과	
합 계		100

□ 지원제외 및 참여제한

○ 양산제작 지원은 제외함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참조

□ 유의사항

- 사업비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완료보고서 제출 전까지 기술가치평가 또는 사업타당성평가를 신청하였거나 기타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설립주체)를 제출 시 사업비(협약금액) 지급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접수방법, 기간 및 제출서류 목록

구분	지원기관(기업 등)
접수방법	현장접수
접수기간	'16.2 ~ 12(수시접수)
제출서류	1.사업신청서 원본1부, 사본7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부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4.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 1부 * 신청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제본하여 제출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방문접수처

구분	주소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팔복동 2가 818)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참조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미숙 주무관	063-905-9752	ddajams@innopolis.or.kr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 성과의 직접사업화 촉진수단인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술가치·타당성평가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소기업 설립을 촉진

□ 사업내용

-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가치 및 사업타당성 평가를 직접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특구법 제2조제5호 및 제9조의3제1항 각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를 하고자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 중인 기관* 등

* 설립주체 :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 국립연구기관 : 정부기관으로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구법 제2조 4호에서 규정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포함[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구소기업 설립주체와 협의중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기술가치평가(사업타당성평가) 보고서 제공

3. 추진절차

절차	주요내용
사업공고	■ 지원대상, 기간, 내용 등 공고
↓	
신청접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상시지원)
↓	
지원대상 심사	■ 자격요건 심사(필요시 전문위원회 개최)
↓	
기술가치평가	■ 기술가치 및 사업타당성 평가
↓	
평가결과 제공	■ 기술평가서 제공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사업기간 中 (~'16년 12월)

☐ 신청방법

- 평가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제출

☐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7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연구개발특구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및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 공고 및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접수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팔복동 2가 818)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1	지원신청서	원본	1부	별지 제1호 양식
2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계획서	원본	1부	
3	공공연구기관 내부결재 문서사본(연구소기업 설립 추진관련 공공연구기관 추진 증빙)	사본	1부	
4	설립주체(공공연구기관)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기술지주회사 인증서 등)	사본	각 1부	
5	특허등록원부(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실시권 계약서 등 공공연구기관의 등기관리 확인)	사본	1부	
6	기술 자료(특허 출원/등록 명세서 기술동향 자료 등)	사본	각 1부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기공서 전임	063-905-9753	sebastian@innopolis.or.kr

Memo

Memo

Memo

Memo